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언론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대상 언론사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다. 광고예산의 산정 기준과 지원제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언론관련 홍보예산 집행 내역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0월 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2
  - 전자메일 : kbh0810@korea.kr

##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오산시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옥외광고물·방송통신·뉴스통신 등을 말한다.
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오산시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남부(오산, 수원, 용인, 평택, 화성에 한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

목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3.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신문사

4. 방송: 「방송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5. 인터넷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방송사

6.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7.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단가 미만의 홍보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운영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오산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

2. 오산시정 관련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광고제한) ① 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제한하고, 행정광고 등 오산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최근 4년 이내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또는 조정 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오산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제6조(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제한에 관한 적용례) 광고제한에 관한 제5조의 규정은 언론사 및 언론인이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행위로 지원을 중단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 1. 구성항목

(단위 : 점)

구분	항목	기본				가·감점			총점
		정부 광고 지표	포털 제휴	보도 자료 건수	기획 특집 건수	창간 연도	매체 적합성	지역 언론	
	환산율 (총 100%)	40%	20%	10%	20%	10%			
	전국일간지	각 기본 항목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율을 곱해 점수를 산정				30	10	10	150
	전국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환산율 (총 100%)	-	30%	20%	30%	20%			
	통신사	각 기본 항목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율을 곱해 점수를 산정				30	10	10	150
	인터넷신문								

\* 방송사(인터넷방송), 잡지사 등의 경우 매체 영향력 및 취재의 적합성을 고려해 결정

### 2. 기본항목

가. 정부광고 지표

나. 포털제휴 : 네이버(2점), 다음(1점), 구글(1점) 3곳의 포털사이트 뉴스메뉴의 검색  
결과 보도 유무 확인

구분	4점 이상	3점 이상	2점 이상	1점 이상
배점	100점	80점	60점	40점

다. 보도자료건수 : 직전 3개월간 배포한 자료가 신문 지면, 포털사이트 뉴스 콘텐츠를  
취재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지 확인

구분	200건 이상	150건 이상	100건 이상	50건 이상	30건 이상	1건 이상
배점	100점	80점	60점	40점	30점	10점

라. 기획특집건수 : 직전 1년간 배포한 자료가 신문 지면, 포털사이트 뉴스 콘텐츠를 취재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지 확인

구분	10건 이상	8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배점	100점	80점	60점	40점	30점

### 3. 가·감점 항목

가. 매체 적합성 : 매체의 취재 능력 및 자체기사 생산성, 신문윤리 위원회·한국기자협회 가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 자체생산 기사 全無 및 헤드라인, 리드문 등 배포 보도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30점 감점

나. 지역언론, 언론인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언론사 또는 언론인

다. 중앙지, 인터뷰 실적 : 도청 출입기자로 도청 중앙기자단에 등록되거나 단독 인터뷰 기사가 포털(네이버, 다음에 한함)에 게재 여부

라. 공보실 주재기자

### 4. 총점산정

가.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광고 금액 단가 차등 산정하며 범위 내 집행

구분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55점 이상	55점 미만
광고 금액 단가	기준단가의 400%	기준단가의 300%	기준단가의 200%	기준단가의 150%	기준단가 이하

나. 기준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